##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이헌승・金炳旭・김정재

서병수・김미애・이주환

송석준 • 홍석준 • 박수영

윤상현 · 김도읍 · 최형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 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 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률 제 호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을 "예치범위·방법, 보관방법, 청구 요건, 지급시기·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 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생 략)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
	<u> </u>
<u>&lt;신 설&gt;</u>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
	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u>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	<u>⑤</u>
금의 <u>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u> ,	예치범위·방법, 보관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	<u>방법, 청구 요건, 지급시기·기</u>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u>